

창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나512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이민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1. 28.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3. 선고 2018가단515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418,2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주식회사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 3. 19.

접수 제24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15. 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모텔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하고, 이때 결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 D는 2015. 2. 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8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피고 명의 등기를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L모텔’이라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7. 21.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549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0. “C는 원고에게 31,6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D의 언니 H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28호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H에게 2015. 11. 3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또는

동업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31. H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H가 항소를 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마. C는 D와 H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3262호로 동업지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8. "C와 D는 C 20%, D 80%의 비율로 L모텔 운영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C와 H 사이에 L모텔 운영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 D, H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269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C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C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5억 6,0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28억 원 × 1/5 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의 2018. 8. 20. 기준 금액 37,418,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C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마쳐진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G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와 G을 순차 대위하여 G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 “계속 중인 사실, ⑥”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⑥ 앞에서 본 바와 같이”로, 제5면 제11~16행 각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나.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조합체가 아닌 C 개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을 제2, 4호,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사건에서 H는 자신이 L모텔의 동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H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D, C, E 사이에 L모텔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다만, 피고는 E가 이 사건 조합체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는 점과 아래 나), 다)항 기재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체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D와 C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D는 C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7. 4. 2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고소는 D가 L모텔을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분배받자는 C의 제안에 따라 C에게 돈을 투자하였으나 C가 그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이는 D와 C가 동업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 D에게 모텔 투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M는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59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는 위 소송에서 L모텔 등을 공동운영하자는 C의 제안을 받아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D의 당시 주장에는 C가 동업을 제안할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동업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 명의로 마칠 예정이었다는 사정(투자 제안 당시에는 D에게 명의신탁을 제의)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C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졌다는 재판상 자백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체가 아닌 C 개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 제7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C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2020. 4.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L모텔에 관한 C의 동업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의 법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는 이 사건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1)

2) 따라서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명의신탁자는 이 사건 조합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전보경, 판사 김희수

1)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게 아니므로,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